자산관리세칙

제 정 2008. 7. 14 개 정(1) 2014. 11. 7 개 정(2) 2016. 6. 17 개 정(3) 2020. 9. 29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공사의 업무용 고정자산 및 부외자산(이하 "자산"이라 한다)의 취득, 보관, 유지, 사용 및 처분(이하 "관리"라 한다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취득 후 즉시 소모되는 소량의 물품
- 2. 소모품비로 취득한 소모성 비품
- 3. 그 밖의 성질상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물품

제3조(자산의 구분) 자산은 공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, 업무용 고정자산과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.

제4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산"이라 함은 경영 수단 상 계속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, 장기간 그 사용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하며, 내용연수 5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단위당 1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말하며, 용도에 따라 일반비품과 전산비품으로 분류한다. 단, 전산비품의 경우 사용 형태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4년으로 할 수 있다.
- 2. "부외자산"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, 증여·잉여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되어 대차대조표 자산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.

- 3. "취득"이라 함은 고정자산을 신설,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, 제작, 교환, 수증 등을 말한다.
- 4. "처분"이라 함은 고정자산을 매각, 폐기, 증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.
- **제5조(자산관리의 총괄)** ①자산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이 담당한다.
 - ②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.
 - ③관리담당자는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이 지명한다.
- 제6조(수급계획) ①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매년 당해 회계연도에 수급해야 할 주요자산과 물품에 대한 수급계획을 예산과 업무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주요자산과 물품의 구입은 수급계획 내에서 함을 원칙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7조(취득, 처분 및 임대차) 자산의 취득,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업무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이 담당한다.
- 제8조(유지·보수) 자산의 유지, 보수에 관한 업무는 관리담당자가 담당한다.
- 제9조(실태조사)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담당자에게 업무용자 산의 사용 및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장 고정자산

제1절 취득 및 처분

- 제10조(부동산의 취득과 처분) ①부동산을 취득,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목 적물의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 - 1. 소재지

- 2. 규모 및 구조
- 3. 지목
- 4. 소유자 인적사항
- 5. 취득 또는 처분가격(취득 시에는 취득 후 소요되는 수리비, 등기비의 계산액, 처분시에는 장부가액을 첨기)
- 6. 취득 또는 처분방법
- 7. 취득 또는 처분사유
- ②제1항의 승인신청 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.
- 1. 등기부등본
- 2. 시가감정서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가감정서를 사후에 징구할 수 있다.
- 3. 지적도 및 위치도
- 4. 건물평면약도(각층별)
- 5. 매매계약서(안)
- 제11조(동산의 취득과 처분) ①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.
 - 1. 품명
 - 2. 종별
 - 3. 규격
 - 4. 수량
 - 5. 취득 또는 처분가격(취득 시에는 매입부대비용, 처분 시에는 장부가격을 첨기)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서(신청사유 등 기재)
 - 2. 시가조서
 - 3. 매매계약서(안)
- 제12조(무형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) 무형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 - 1. 종류 및 수량
 - 2. 취득 및 처분가격
 - 3. 취득 및 처분방법
 - 4. 취득 및 처분사유
 - 5. 대금정리방법

- 제13조(건축물의 축조 등)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, 철거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목적물표시 사항을 기재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.
 - 1. 소재지
 - 2. 종별
 - 3. 구조
 - 4. 건평
 - 5. 사유
 - 6. 공사검토서 등
- 제14조(임대차) ①부동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목적물의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 - 1. 부동산의 표시, 소재지, 지목 또는 구조, 평수
 - 2. 임대차인 인적사항
 - 3. 임대차 계약조건
 - 가. 임대차보증금
 - 나. 월정임대차료
 - 다. 기 간
 - 라. 그 밖의 조건
 - 4. 계정처리과목
 - 5. 채권보전방법
 - 6. 부보관계
 - 7. 그 밖의 사항(임차부동산에 대한 사전조사사항 등)
 - ②동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임차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5조(취득 또는 처분 등 요청) 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제10조, 제11조, 제12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직제규정에 의한 사무분장에 따라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제16조(취득일) 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대한 대가지급일로 한다.
- 제17조(계정처리) ①제10조 내지 제13조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계정에 계상한다.
 - ②부동산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은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계정의 임

차보증금 과목에, 월정 임차료는 손익계정 관리업무비 중 경비(목)로 처리하고,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유동부채계정의 제수입보증금 과목에, 월정 임대 료는 손익계정 영업외수익 중 잡수익(목)으로 계정 처리한다.

- ③동산을 임대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.
- **제18조(장부가액)** ①고정자산 계정에 계상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 - ②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축물에 안분 배정한다.
 - ③제1항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2절 고정자산의 관리

- 제19조(관리대장의 비치와 정리) ①고정자산,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, 처분,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별 대장은 전산명세로 갈음할 수 있다.
 - ②관리담당자는 그 소관자산에 대한 변동 및 이동사항을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권리증의 보관)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및 임대차계약서는 자산관리 주관부 서장이 보관한다.
- 제21조(업무용동산의 사용) 각 부서장은 사용하는 업무용동산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며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른 해당사항을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22조(권리보전) 자산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권리담당은 소유권,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·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23조(등기) ①토지,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, 지번, 지목, 평수 등이 항상 부동산의 공부상과 일치하여야 한다.

②부동산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임대인의 위약으로서 공사에 발생할 배상금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24조(부보) ①업무용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종합보험 또는 화재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며 보험금액은 당해자산의 잔존가액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시가까지 부보할 수 있다.

②동산(차량제외)에 대한 재산종합보험 또는 동산종합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며 부보금액은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일괄부보한다. 다만, 부외자산에 대한 부보금액은 감정가액으로 부보할 수 있다.

③차량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부보한다.

④제15조의 임대차목적물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부 담으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동 보험수익권을 공사앞으로 양도하도록 하거나 동 증권에 질권설정을 하도록 협의해야 한다.

제25조(재물조사 및 관리보고) 직제규정상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 장은 매년 1회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한다.

1. 재물조사는 장부상 품목과 실물을 정확히 실사 확인하여야 한다.

다만, 전산시스템 등 기타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실물 확인이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동 방법에 따를 수 있다.

- 2.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요원은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이 지명한다.
- 3. 재물조사 대상품의 가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그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에 의한다.

제26조(손망실품과 책임) ①재물조사 결과 부족함이 발생될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당해 업무용동산의 종류, 규격, 수량, 분류번호를 명확히 확인하여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른 해당 사항을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물품을 관리, 보관,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경우 전용 사용일 때에는 전용자가 변상책임을 지고 2인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망실에 끼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

진다. 그 손망실 발생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④손망실품에 대한 변상의 정도와 방법은 관리담당자의 신청에 따라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손망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사전에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7조(변상)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현금에 의한 변상이 불가능할 시에는 현품에 의하여 변상할 수 있다.

제28조(현금변상) ①현금변상액의 평가기준은 손망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며, 그 발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②이 시가의 평가는 손망실 발생 또는 발견시기, 당해 물품의 가격, 감가정도 내용년수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확산하여야 한다.

제29조(현물변상) 현물로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는 손망실 당시의 상태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한다.

제3절 고정자산 감가상각

제30조(감가상각단위)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단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- 1. 건축물중 부대건물은 이를 구분한다. 다만, 그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일괄 처리할 수 있다.
- 2. 동일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중·개축등으로 그 구조가 상이할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.
- 3. 업무용동산은 1품 또는 1조를 상각단위로 한다. 동종의 업무용동산을 동시에 구입하였을 때에는 일괄상각 할 수 있다.

제31조(상각실시) 관리책임자는 업무용고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를 확인 후, 이를 근거로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절 영 선

제32조(영선공사) ①영선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- 1. 설계도면
- 2. 공사비추산서
- 3. 그 밖의 참고자료
- ②제1항의 공사에는 공사용 자재구입을 포함한다.
- 제33조(영선공사의 숭인신청) ①관리담당자는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한 영선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서(공사사유 등)
 - 2. 설계도서
 - 3. 2인이상 견적서
 - 4. 그 밖의 참고자료 등
 -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금액을 사정하여 승인한다.
- 제34조(공사의 설계 변경숭인) ①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의 사유, 신·구설계서와 시방서, 도면, 공사비증감명세서를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경우 공사 설계변경에 수반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③제3항의 신청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여 공사금액을 사정하여 승인한다.
- 제35조(공사의 시공) ①영선공사의 시행은 도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규모 또는 성질에 따라 직영할 수 있다.
 - ②관공서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함이 공사에 유리한 공사일 경우는 공사시공 소관부서의 공사비 추산서에 의거 그 공사비만을 지급하고 공사를 대행케 할 수 있다.
- 제36조(계약서등의 작성) 관리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(내역서 포함)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37조(공사의 준공보고) 관리담당자는 영선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8조(공사준공일의 연기) 공사 중 예기치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 진척에 차

질이 생기거나 또는 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39조(공사의 감독 및 검사) ①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공사의 감독 및 검사자는 소관부서장이 지명한 자가 행한다. 다만,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관계기술자의 입회아래 행한다.
 - ③감독 및 검사내용은 검사자 및 기술자의 연서로써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한다.
- 제40조(영선공사의 계정처리) 영선공사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손익계정의 경비, 수선유지비(목)로 계정처리하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고정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.

제3장 부외자산

제1절 통칙

- 제41조(부외자산의 범위) ①부외자산은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.
 - ②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·담보자산· 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.
- 제42조(부외자산의 자산등재) ①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. ②기증·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 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정자산 또는 특정 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.
- 제43조(임차자산 등의 관리)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.

제44조(비망등재가액)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비망가액은 1,000원으로 한다.

제4장 물품의 구입 및 사용

제2절 물품의 구입

제45조(구입) 물품의 구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46조(공동구입) ①자산관리 주관부서장은 피복, 장표, 인쇄물, 그 밖에 성질상 공동구입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일괄 구입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부할 수 있다.

제47조(검수) ①납품한 물품을 검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발주시의 견품 또는 사양서에 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부서장에 게 검수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검수에 있어서 기술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3절 물품의 사용

제48조(물품 및 공동구입품의 청구) ①각 부서장은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용도 및 수량을 명시하여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②각 부서장은 장표, 그 밖의 인쇄물 등 공동 구입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의하여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에게 신청한다.

제5장 불용품의 처분

제1절 통칙

제49조(정의) ①불용품이라 함은 업무용 동산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사

- 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불용결정된 것을 말한다.
- ②불용처분이라 함은 물품의 관리전환, 매각, 양여, 해체, 폐기 등을 말한다.
- ③관능검사라 함은 검사자의 정밀한 감각(오감)으로 물품의 가치를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.

제2절 불용결정 및 처분

- **제50조(불용대상품의 상태분류)** ①관리담당자는 불용결정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.
 - 1. 신 품 : 신품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
 - 2. 중고품 :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
 - 3. 요정비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
 - 4. 폐 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수리할 수 없는 물품
 - ②물품의 상태분류는 관능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그 밖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.
- 제51조(불용결정기준)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 할 수 있다.
 - 1.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가능성 없는 물품
 - 2. 예측할 수 없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물품
 - 3. 주장비가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또는 주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확보될 가능성
 - 이 없었을 때의 그 부속품
 - 4.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 - 5. 시설물에서 제거된 것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
 - 6.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 - 7.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
 - 8.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물품
- 제52조(불용결정 승인신청) 관리담당자가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1조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53조(매각처분) 관리담당자는 불용품에 대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규 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처분할 수 있다.

- 제54조(무상양여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원호기관 또는 그 밖의 공익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
 - 1.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
 - 2. 매각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물품
 - 3.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
 - 4.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품
- 제55조(해체) 관리담당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속품 또는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속품 또는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. 이경우 이용가능품은 적정한 평가를 하여 부외자산 또는 소모품으로 관리하여야한다.
- 제56조(폐기)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용품은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(소각)할 수 있다.
 - 1.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분되지 않는 물품
 - 2. 변질 부패하기 쉬운 물품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장이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

제3절 처분결과 보고

- 제57조(처분결과 보고) ①관리담당자가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처분결과보고서를 즉시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자산관리 주관부서장, 전산관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매각인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- 1. 처분의 구분
 - 2. 처분일자
 - 3. 처분대금
 - 4. 해체에 의한 활용품의 명세
 - 5. 폐기 집행자 및 입회자의 직책, 성명
 - ②불용품처분이 해체 또는 폐기에 의한 때에는 불용품처분 결과보고서에 해체 또는 폐기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부칙(제정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